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보도한 언론의 법적 책임



글. 임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증권가 정보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mbn보도(출처 : mbn, 「악성루머 양산 증권가 찌라시 '도마 위」, 2008년 10월 4일)

1. 들어가며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사회, 그리고 개인들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개인들은 인터넷 포털이나 뉴스 서비스, SNS 통신 등 각종 비 전형 정보원으로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인터넷 바다를 통해서 삼시간에 전국민의 의사결정에 그리고 정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기존 언론들의 활동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언론들은 기존 매체들로 하여금 속보경쟁에 내몰리게 했고, 이러한 속보경쟁은 필연적으로 언론의 정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는 한다. 인터넷상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기사들의 법적 책임이 대표적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1) ‘찌라시’라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단어이고 표준어도 아니다. 해당 단어가 ‘근거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짤막한 글’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찌라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정보' 중에서 소위 '짜라시'²⁾에 근거한 언론보도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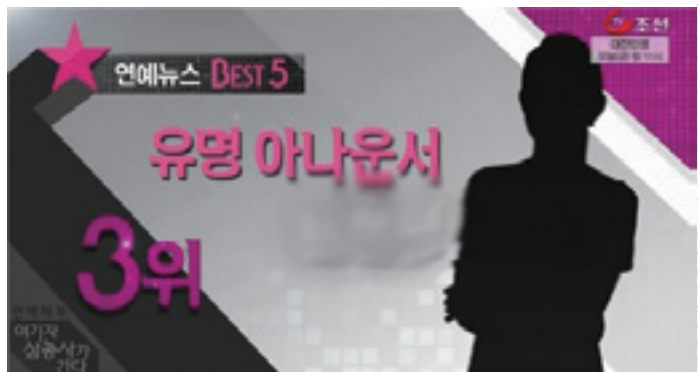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짜라시'로 일컫는 문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고 일정한 구독료를 지불하는 구독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설 정보지'와, 이와 달리 출처나 작성자도 알 수 없으며 제각각의 형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소위 '증권자 짜라시'의 두 가지이다. 그렇지만 정보출처의 명확성이나 정보내용의 정확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²⁾에서 두 가지 문건은 명예훼손법제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보인다.

과거 짜라시는 종이나 디스크에 복사되어 유통되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소위 폐쇄형 SNS 매체들의 등장은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짜라시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지 않은 온갖 소문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소위 이러한 '카더라 통신'은 대중들의 엿보기 흥미에 기반을 두며 나름 확고한 시장을

형성했다.

문제는 이러한 짜라시 내용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경제인, 특히 연예인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나 은밀한 사생활 등을 담고 있어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당사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참지 못해 짜라시를 작성한 사람 혹은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확대·재생산됨에 따라 나타나는 해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배우 최진실의 자살 사건 등이다. 최근 아나운서 황수경 씨도 짜라시를 근거로 '황수경 씨 부부의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 본부장 및 방송인 출신 기자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황수경씨 부부의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 프로그램 캡처 (출처 : TV조선, 『연예해부,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 2013년 9월 6일)

2) 일부 정보지들은 아예 표지에 '출처나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한다.

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해당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TV 조선이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공개 사과하고 황수경 씨가 소를 취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인터넷 블로그에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31살 홍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건은 소위 'B급 언론'으로 치부되던 짜라시가 이제는 주류 언론에 보도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씩씩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인터넷매체와 속보 경쟁에 시달리는 한국 언론의 취재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기존 명예훼손 법제에서 짜라시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출처 불명의 짜라시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의 법적 책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언론의 자유의 한계 : 명예권과의 관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³⁾ 언론의 자유란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명예권은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

하는 인격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로, 이는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보호되어야 한다.⁴⁾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가능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언론도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를 가지므로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즉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로부터의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언론 자유의 핵심은 국가로의 자유로 변화하고 있다. 즉, 언론과 개인 간의 법적 충돌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으며, 여기에 과연 국가는 어떤 입장을 말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최대 난제로 등장한 것이다.

두 권리의 관계에 대하여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⁵⁾ 또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⁶⁾라고 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헌법 제21조 제1항

4)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판결

5) 헌법 제21조 제4항

6) 헌법 제37조 제1항

이러한 헌법상 추상적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두 권리의 우열은 쉽사리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중략)…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⁸⁾하고 있는바, 결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제반 이익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자는 소위 ‘이익형량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찌라시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의 법적 책임

가. 형법과 민법의 조항

헌법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하위법률은 민법과 형법이다. 우선 형법은 제307조 내지 제309조에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제310조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제750조 및 제751조에서 일반 불법행위의 일종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논리구성은 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과 형법의 규정들이 개별 사안에 해석·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이라는 두 기본권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하에서는 찌라시와 문제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7) 헌법재판소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등

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키29 판결 등

나. 익명 보도와 피해자의 특정

짜라시에서 특정인의 실명이 그대로 나타나
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며(특히 사적인 사안의
경우), 이보다는 익명 혹은 이니셜만으로 지
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위 황수경씨에
관한 TV조선의 보도 내용 역시 방송에서 실
명의 언급은 없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보도
가 있더라도 도저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도 의외로 자주 쟁점으로 등장
한다.

현재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은 ‘특정성’에
관하여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기사
에서 반드시 특정인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
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
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
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
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
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해석한다.⁹⁾ 기
사 자체에서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었을 때
에만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부

정확한 기사나 사실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사가 면죄부를 얻기 쉬워지는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다. 위법성의 판단

(1)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
내용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
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진실성과
공익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위법
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원은 좀 더 넓게 해석하여 보도 내용이 진실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도자가 그것을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형법상·민법상의 위법성이 조
각된다고 해석한다.¹⁰⁾

형법 제310조는 헌법상 개인의 명예와 표
현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두 법익 간의 조화에
대한 중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적인 조항
이지만, 한편으로 언론의 ‘숨 쉴 공간’에 대한
정책적 고려이기도 하다. 결국 법원은 두 법
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여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보도
자가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이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10)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2) 상당한 이유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즉 ‘상당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① 적시된 사실의 내용, ②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③ 사실 확인의 용이성, ④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해석기준을 제시¹¹⁾하고 있다. 또한 그 판단 시점은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그 후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도 참고한다고 한다.¹²⁾

(3) 구체적인 판례 사안

상당성을 인정하여 위법성을 부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일간 신문사 기자가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하여 피해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알게 되고, 수사담당 검사에게 취재를 요청하여 다른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수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취재하여 이를 보도한 사안에서, 취재원이 해당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인데다가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사건 당사자는 구속되어 있어 직접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 ②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을 다룬 논픽션 드라마에서 배후로 묘사된 자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하여, 백범 암살 사건은 관련자들이 대부분 이미 사망하여 과거 진술 내용을 수집하여 조사하는 외에는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고,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드라마에서 김창룡을 백범 암살의 배후로 묘사한 것은 진실성이 명백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억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1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1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반면 상당성이 부정되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이른바 ‘이해찬 국무총리 양주파티’ 사건에서, 국무총리 일행이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위 기자가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 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 ② 상습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이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한 수사기록을 열람한 기자가 이를 그대로 보도한 사안에서, 성 접대 여부는 상습사기사건 수사의 초점이 아니었으므로 수사 담당 검사는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 여부에 대한 아무런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다. 위 박○○은 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자신을 접대한 사람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비로소 이러한 사실

을 진술하였으며, 위 기자가 열람한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사실, 관련 연예인들이나 소개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위 진술이 진실인지 비교적 용이하게 검토할 수 있었고 또한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들어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 ③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시청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방송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 일방적인 제보가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 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고,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4) 소결

이상과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쳐 볼 때, 대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상당성이 있는 경우란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 일방적인 제보에 바탕을 두고 보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름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인지를 의미하며, 특히 본인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과연 어떤 근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상당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논문이나 학술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발표 등은 상당성을 인정받기 쉬운 것이다. 나아가 소설이나 다른 언론기관의 기사 등도 작성자의 권위나 신뢰에 따라서는 상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증권가의 짜라시는 ① 발언자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② 사실의 정확성에 관한 사회 통념상 용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¹³⁾ 등을 고려할 때, 취

재활동의 동기라면 몰라도, 다른 자료¹⁴⁾의 도움이 없이 단순히 짜라시의 내용만을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면 ‘상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공적 인물에 관한 이론

공적 인물에 관한 이론은 공직자의 공적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행해졌음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1964년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¹⁵⁾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

13) 짜라시 자체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14) 특히 피해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대표적이며, 만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입장 등도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15) 헌법재판소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등

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라고 판시¹⁶⁾하여 공적 인물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적 인물(public figure)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정치인¹⁷⁾, 재벌그룹의 회장¹⁸⁾, 언론인¹⁹⁾, 연예인²⁰⁾을 공적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 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짜라시에서 언급되는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등은 대부분 공적 인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적 인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논한 상당성 역시 모두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의 감시기능 혹은 비

판기능을 고려할 때 상당성의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결혼이나 이혼, 성적 문제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대한 보도는 여론의 형성이나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언론자유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짜라시의 많은 내용이 연예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자극적인 내용으로서 이는 단순한 대중적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공인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나아가 출처도 작성자도 알 수 없이 짤막한 글의 형태로 무작위로 유포되는 짜라시를 익명의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짜라시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짜라시만을 그대로 보도·유포하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피해자의 인격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은 그에 따른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1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판결

17) 부산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2노215

18)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선고 95카합3438 판결

19)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20) 서울지법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3. 마치며

이상에서 찌라시의 내용만을 믿고 보도한 기사가 우리나라 법제에서 면책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언론으로서 스스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언론 기사를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면책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위 '카더라 통신'의 대표적인 예인 찌라시를 믿고 그대로 보도를 했다면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사에 대한 사회적 용인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해석된다.

언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감시견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얼굴 하나는 부단히 사

회를 감시하며 짚어야 하고, 또 하나의 얼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의 확인 여부는 단순한 소문과 언론보도를 구별하는 근거가 되며, 또한 언론을 일부 저급한 사이버언론과 근본적으로 차별화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정보주체가 저마다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경에서 언론이 시중의 소문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신중을 기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확인된 사실만 보도하겠다는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